

2011년 1/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신청서 정기접수 공고

마포구 공영주차장(거주자우선주차제)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 공단은 다음과 같이 2011년 1/4분기(배정기간 : 1월 ~ 3월)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신청서를 정기 접수함을 공고합니다.

2010. 11. 16.

마 포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(직인 생략)

1. 대상 주차장 :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마포구 관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시설공영주차장(성산2-1, 망원1-1, 망원2-1, 한서, 공덕1-1, 공덕1-2, 상암1 등 7개소)

※ 당인 노상공영주차장 야간시간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(별도 시간·요금 적용)

2. 신청대상 : 마포구 관내 거주자·사업장 근무자의 차량 소유주

※ 거주자 증명은 마포구 관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함이 증명 가능한 자.

3. 배정기준 및 조건 : 첨부(배정기준 조건) 문서 참조

4. 접수기간 : 11. 22.(월) ~ 11. 30.(화)

※ 4/4분기 이용자(11. 22일 기준, 배정자 및 대기자)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분기에 대해 자동신청 됨. (단, 자동신청이 배정연장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음.)

※ 마포구 자동차주·정차위반과태료 체납(3회)시 신청 및 배정 제한

※ 4/4분기 취소자(이용자 및 미납 직권취소 등) 및 2.5톤이상 차량 등은 자동신청에서 제외

※ 정기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기자로 분류하여 추후 배정 여유 구획이 있으면 추가 배정함

5. 접수구분 및 주차요금(3개월분 선납)

이용시간		전 일 (24시간)	주 간 (09:00~18:00)	야 간 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 기준)	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	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	시 설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-

6. 접수방법 : 공단(주차사업팀) 방문, FAX(☎02-376-4068), 인터넷(www.mfmc.or.kr) 중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 선택

7. 신청구비서류(각 1부) : ①신청서 ②신분증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주민등록등본(관내 최초 전입일 기재분) ⑤확인서 또는 사업장등록증(사업장종사자 등 비거주자에 한함) ⑥해당자에 한해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서(상이자에 한함) 사본 제출

8. 배정발표 : 2010. 12. 6.(월) / 요금납부기한 : 2010. 12. 17.

※ 배정자 발표와 관련해 별도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.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사이트(www.mfmc.or.kr) 개별확인이나 공단으로 유선 문의(확인) 바랍니다.

9. 기타 배정기준·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담당 부서인 주차사업팀(☎ 300-5040~4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1년 1/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신청 안내

2011년 1/4분기(배정기간 : 1월 ~ 3월)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등 배정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신청기간(정기) : 2010. 11. 22.(월) ~ 11. 30.(화)

■ 신청방법 : 공단 직접 방문, 팩스(376-4068), 인터넷(mfmc.or.kr)

■ 신청서류

1. 現[2010년 4/4분기(10월~12월)] 사용자 및 대기자

○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분기 자동 재신청됨. (단, 자동재신청이 배정연장 사용을 의미하지 않음, 전용구획 사용자는 제외)

※ 자동 재신청대상자는 현재 사용 중인 구획을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

※ 4/4분기 취소자(이용자 및 직권취소 등) 및 2.5톤 차량 등은 자동신청에서 제외

※ '10. 11. 22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현 분기(10년 4/4분기), 다음분기(11년 1/4분기) 중 선택을 하셔야 하며, 현 분기 신청시에는 '11. 1/4분기 정기배정은 제외됩니다.

○ 이용(신청) 관련 변경사항(주소, 차량, 구간변경, 연락처 및 기타 변경 등) 있으면 정정기간(11.22~30)에 인터넷(epaking.mfmc.or.kr)

또는 동별 담당자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 (필요시 변경 구비서류 제출)

2. 신규 신청자(공통서류 :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)

○ 거주자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마포구 관내 최초 전입일 기재분),

※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등(초)본상 마포구에 거주함이 증명 가능.

○ 비거주자(사업장 또는 직장인) :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확인(또는 증명)서

■ 배정 발표(예정) : '10. 12. 6.(월), (요금 납부 : '10. 12. 6. ~ 12. 17.)

■ 기타 유의사항

○ 배정확인은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신청자가 인터넷 또는 유선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.

※ 매 3·6·9·12월의 5일은 다음 분기 정기배정자 발표일입니다.

○ 주차요금 미납 시 사전통보 없이 배정이 제한됩니다. (사용포기로 간주타안에 배정)

2010. 11. 17.

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(www.mfmc.or.kr)

<<배정 기준 및 조건>>

1. 배정기준

- ① 배정방법 :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정보 및 거주정보를 기초한 점수를 반영하여 배정
- ② 배정심의대상 :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자
- 정기배정 이후 잔여구획 발생 등에 따라 수시 접수(신청), 배정
- ③ 배정우선순위 선정(우선순위 중 배점표 점수에 따라 배정)
- **제1순위** : 배정(신청)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,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을 대상으로 배점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②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)
 - **제2순위** : 1순위 우선 배정 후 관내 거주자 중에서 배점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②자동차 배기량이 낮은 순)
 - **제3순위** : 2순위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 및 사업자 근무자)의 상위점수(해당차량 합계 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 ②관내 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)

<표 1>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

선 정 항 목		점수	비 고
관내 전입일 (거주자)	- 거주연수 = 거주기간 × 1.0 - 거주월수 = 거주월수 × 0.09 ※ 최대 적용 값 : 20점미만 적용	20	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
차종별 (공통)	① 경차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	2	
특별가점 (가점)	국가 유공자 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등록된 차량. 단, 시각장애인(1~4급)	10	입증 서류 첨부 시
	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	5	
우대가점	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	10	
	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(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)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65세 이상 고령자 차량	5	입증서류 첨부 시
	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중 4번째 차량	- 30	
	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중 3번째 차량	- 20	
	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중 2번째 차량	- 10	
기사용(수해)자	배정 1회마다	- 3	1회 배정 시 ±3점, 2회 연속 배정 시 ±6점(1년 단위)*
탈락횟수	매회 탈락 시	3	
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근무자(비거주자)	- 마포구 관내 사업개시 연수 = 기간 × 1.0 - 마포구 관내 사업개시 월수 = 월수 × 0.09 ※ 최대 적용 값 : 20점미만 적용	20	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

비 고

-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
 -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가점부여
 - 위 기준 외에 "심의위원회(마포구시설관리공단)"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 - 기사용자, 탈락횟수 누적은 1년 단위(예- 2008년 배정 3회 -9점→ 2009년 1분기 0점)
- ④ 신청서 허위(착오)기재,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, 후를 불문하고 배정(지정)이 취소 됨.
- ⑤ **신청내역(배정확인 포함)은 이용자가 확인**하여야 하며, 신청내역에 대해 미확인(또는 누락)으로 발생하는 사안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2. 신청자격

- 신청일 현재 ①관내 거주자 ②관내에 사업장(근무처)이 있어 주간(또는 전일)에 빈 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.
- ※ **우선배정제외대상** : ①관련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(영입용 차량 (렌터카 포함), 2.5톤 이상 화물차, 16인승 이상 승합차, 특수차량 등) ②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③동일 차량을 2개 구간(전용구획 포함) 이상에 중복배정하지 않음(중복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마포구시설관리 공단이 배정취소 등 임의 처리 함)

- ※ 기타 관련 법령(조례 및 방침 포함) 등에서 정하는 경우
- ※ 우선배정제외대상이라도 주차여유구획 발생시①,③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(**민원 발생(또는 제기) 시 배정 취소**)

3. 배정(지정) 원칙

-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(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, 확인 시)
-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후 거주자 배정
- 주차 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주차구간(구획) 지정기간은 **3개월(분기) 단위**이며 주차요금도 지정기간 요금을 선납하여야 함.(구간배정 원칙)
- 주차요금을 납기 내 미납한 경우에는 지정취소하고 취소 분은 후 순위자(또는 대기 자)에 배정함.(**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예고 없이 배정이 제한 됨.**)
- 개인운송사업자 차량(개인택시, 2.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)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
- 공사 등으로 인해 구획선이 삭선 되거나 기타 이용불가 사유 발생시에는 대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해당구간 지정일이 늦은 자 ② 지정순위가 늦은 자 순을 지정(배정) 중지 또는 취소함.
- ※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 되는 경우 수시 분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
-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차량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**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주차권 반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불 처리함.(별도 반환처리 기준 참조)**

4. 배정(지정) 취소(제한)

- 주차구획(구간) 배정 후 7~15일이 경과 하여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단 직권으로 취소
- 기타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거주자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
- 신청서 허위(착오)기재,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 하고 배정(지정)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5. 배정자 사용조건

- 주차권 **미부착시 단속(견인)** 대상이 됨.
-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 유지
-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**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**에 의하여 차량 훼손 및 도난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님 (주차구획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민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)
-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, 지정주차기간,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 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(견인) 대상이 됩니다.
- **배정확인은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확인**하여야 하며 배정이 되신 후에는 정해진 기간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. **미납 시에는 배정 제한(취소)**
- 마포구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 신청 및 배정 이용자는 **<배정기준 및 조건>에 동의**한 것으로 합니다.
- 기타 이 유의사항(배정·사용 조건 등)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.

6.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(3개월 선납)

이용시간		전 일 (24시간)	주 간 (09:00~18:00)	야 간 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 기준)	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	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	시 설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

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
(☎ 02- 300- 5042~44, fax 02- 376- 4068)